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신홍균*

목 차

- I. 서언
- II.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
- III.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 금지와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의의
- IV. 일반 전쟁법 규범과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
- V. 제한전쟁론과 우주공간의 무기배치 및 사용의 제한
- VI. 결론

*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I. 서언

1967년 우주조약 제4조는 지구궤도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조 후반부는 달과 천체행성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구궤도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대량파괴무기 이외의 무기배치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공간은 달과 천체행성으로 한정된다는 점 등에 따라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찰위성은 공포의 핵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시기에, 균형의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서, 인공위성의 요격 기술이 본격적으로 실험단계에 이르렀고,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냉전시기가 끝나자, 다른 형태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걸프전은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이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입증하여 주었다. 이에 지상전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특히 지상전에서 열세인 국가들이 미국 등의 우세한 국가의 정찰위성이나 통신위성 등의 우주자산을 공격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일부 정책과 학술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을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 "우주무기화"(Space Weaponiz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¹⁾

1) 미국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space weaponization"의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 당시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사정변경의 하나로서 우주 폐기물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우주공간에서 대량파괴무기가 아니더라도 무기의 사용은 우주 폐기물을 대량으로 생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공간을 쓸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에 우주 폐기물 문제는 전투 목적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논거임에 틀림없다.

다만, 동원되는 무기체계의 특성, 또는 운용상 우주 폐기물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군사적 이용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규범을 준수하는 군사적 이용, 예컨대 우주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이 달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전에서의 이른바 "제한전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논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양상을 살펴 보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UN헌장, 일반 국제법상의 전쟁 규범, 및 제한전쟁의 원리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징하는 무기배치는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구체적 모습은 가상의 교전 당사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지기에 가변적이다. 현재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에서 그 전략이 공론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의 교전 당사자로서 중국과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처럼 공론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1. 미국의 우주무기화(Space Weaponization) 정책

우주공간의 공격적 이용으로의 정책 전환은 레이건 행정부의 국가안보지침(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42에서 “우주활동이 미국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고 평가된다. 특히 동 지침은 위성과 파괴무기(ASAT)시스템(이하 “ASAT시스템”이라 칭함)의 개발을 허가했다. 이어서 2001년 당시 국방장관인 럼스펠드가 의장을 맡은 의회 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국가 우주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²⁾

이 정책은 1972년 방어미사일조약을 2002년 6월에 미국 정부가 탈퇴하면서 공식화되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2006년 우주정책은 우주공간에서의 미국의 행동의 자유와 능력 및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억제(“dissuade 또는 deter”)하고 미국의 국익에 적대적인 국가의 우주이용능력을 필요하다면 차단(deny)함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즉 적대국이 우주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미국이 거부할 권리를 천명할 뿐만이 아니라 우주공간에서의 미국의 자유에 도전하는 능력을 다른 국가가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³⁾

미국 국방성의 2013년 우주작전에 관한 합동교범은 5개 요소를 우주작전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하였다.⁴⁾ 첫째, 취약성이다. 우주자산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높는데, 또한 취약하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행동의 자유이다.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이다. 셋째는 보호이다. 우주 자산을 보호할 능력의 확보이다. 넷째 요소는 셋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전 세계에 걸쳐서 대응할 능력의 중요성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우주 억지력이다. 미국의 우주자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상군과 합동하여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요컨대, 미국의 정책은 우주자산에 대한 향후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우주의 공격적 이용정책을 포용하고 반면에 외교적 노력을 지양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⁵⁾

2)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pursuant to Public Law 106-65,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0, Section 1622, 11 January 2001, 2016년10월 방문, <http://www.dod.gov/pubs/space20010111.html>.

3) 위 청문회 속기록 67면

4) Department of Defense, JP 3-14, Space Operations, I-2.

2. 우주무기의 종류

우주공간에 배치되거나 사용되려는 위성파괴무기(ASAT), 레이저빔, 또는 드론 등이다. 위성파괴무기는 운동성(kinetic) ASAT는 목표물을 파괴해서 다량의 우주폐기물을 남기게 되지만, 지향성에너지(directed energy) ASAT는 목표물의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기능만을 상실하게 한다. 러시아의 Kosmos 2499, 중국의 시안 등이 이에 속한다. 미국 순양함 Ponce호에 설치된 레이저빔이 우주공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임무가 공개되지 않은 X-37b도 우주공간에서 드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다.⁶⁾

3. 우주무기 통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1967년 우주조약은 대량파괴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할 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 및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 시절에 구속력 있는 조약에 대해서 당시의 구 소련과 미국간에 진행되었던 협상에서는 우주 무기배치의 개념도 정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⁷⁾ 이러한 여건에서 우주 무기배치에 관한 논의는 UN 군축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 PAROS 결의

우주 무기배치에 대한 UN에서의 논의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보다는 총회 제1차 위원회에서 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국가간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1981년 CD에서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PAROS)라고 불리는 결의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바 있으나 미국은 현행 국제조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PAROS를 국제조약화하는데에는 반대했다. 2000년에 UN 총회는 찬

5) 미국 하원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소속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청문회 “Weaponizing Space: Is Current U.S. Policy Protecting Our National Security?”, 2007년5월23일청문회 속기록 67면

6) <http://edition.cnn.com/2016/11/28/politics/space-war-us-military-preparations/> 2017년5월1일 방문

7) 위 청문회 속기록 45면

성 163 대 기권 3으로 PAROS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미크로네시아, 이스라엘 및 미국이 기권하였었다.

(2) PPWT회의

2004년10월에는 러시아가 자국은 우주공간에 무기를 배치하는 첫번째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2008년 CD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Prevention of the Deploy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이하 PPWT라 칭함) 조약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무력의 사용 및 위협은 우주물체에 대한 여하한 적대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주물체의 파괴, 손상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기능장애 또는 의도적인 궤도의 변경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우주공간에서의 무기”의 개념을 우주공간에 위치한 여하한 기기로서 우주공간, 지표 또는 지구 대기권에서 우주물체의 파괴, 손상 또는 정상적 기능의 방해로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인류의 존재에 필수적인 생명권의 구성인자를 배제하거나 손상하려는 목적으로 생산 또는 전환된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 제2조는 그러한 무기의 우주공간에의 배치를 금지하고, 우주공간에서의 무력의 사용 및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7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의 우주정책은 공평성과 실효성있는 검증이 가능하다면 우주공간에서의 무기통제를 위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UN CD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입장과 그것을 포괄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미국의 우주정책이 “우주에서의 우위확보”(space dominance)라는 미국 공군의 교리(doctrine)로 구체화된다.⁸⁾ 즉 미국은 압도적 기술력에 근거한 우위성을 활용하자는 전략을 택하였다. 반면에 러시아나 중국은 그 정도의 우위성 확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ASAT 관련 협상의 장애 요인은 관련 국가들이 상호견제를 통해 국가 안보가 확보되도록 할 것인지 아

8) 위 청문회 속기록 12면 ; U.S. Air Force, “Counterspace Operations,” Air Force Doctrine Document 2-2.1, August 2, 2004.

니면 자신이 우월한 무기를 확보하여 상대를 압도하여 국가 안보를 확보할 것인 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⁹⁾

요컨대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목표와 양상은 압도적 우위에 의해서 상대방의 우주이용능력을 차단(deny)함을 목표로 하는 전쟁, 아니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이 우주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아무도 우주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쟁 등으로 예상된다.

Ⅲ.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 금지와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의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우주 전쟁의 양상은 무력의 사용과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상대를 압도하는 전력의 우주무기사용은 무력의 사용에 해당되고, 그러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 또는 우주환경을 파괴해서 교전국 모두가 우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위협은 무력의 위협에 해당한다. 이에 무력사용과 위협에 관한 일반 국제법 규범에 따라서 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와 한계

(1) 무력의 개념

UN헌장 제2조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에서 무력의 개념 정의의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하나는 실증주의적 입장으로서 무력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특정 행위가 그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무력사용의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해석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가 무력사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9) David A. Koplow, "ASAT-Is Fac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Regulation Of Anti-Satellite Weapons" 30 Mich. J. Int'l L. 1187,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p.1216

전자의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여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무력에 해당한다.¹⁰⁾ 이러한 해석에서는 무기의 개념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학설은 일반적으로 무기라고 간주되거나 또는 그 목적이 인명 및 재산의 파괴라면 무기로 간주된다고 본다.¹¹⁾ 한편, 그 결과의 규모에 따라서 무력에의 해당 여부가 판별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¹²⁾ 예컨대 컴퓨터 네트워크 침해도 무력에 해당할 수 있다.

두번째 무력사용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는 해석론에 따른다면, 무력은 단지 강제 수단이고 그 강제의 합법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기준은 국제 질서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이다.¹³⁾

(2) 정당한 간섭과 무력사용

20세기 후반에, 정밀유도병기의 발달과 더불어, 특정 목표물에 대해 특정하게 제한된 목적하에 무기가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1990년대 말 코소보 사태에서 NATO 회원국들의 공중폭격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한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서, UN헌장의 해석에 따른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합법성을 부정하는 주장의 논거는 헌장에 대한 이른바 협의의 해석론이다. 그에 따르면, 헌장상 금지되는 행위는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행사에 한한다. 그래서 다른 목적하의 무력 행사는 허용된다고 본다.¹⁴⁾ 합법성을 인정하는 주장의 논거중의 하나는 광의의 해석론이다. 그에 따르면 헌장 제2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볼 때에, 헌장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집단적 안전보

10)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에서 재인용

11) Brownlie 위 전게서 362면

12) Dinstein, 'CNA and Self-Defense', 103.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에서 재인용

13) Myres Smith McDougal and Florentino P. Feliciano, *Law and Minimum World Public Order: The Leg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Coercio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1).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에서 재인용

14) W.J. Reisman, 'Coercion and Self-determination : Constructing Charter Article 2(4)', 78 AJIL, 1984, p.642

장 또는 정당 방위 이외의 다른 형태의 무력 사용은 금지된다.¹⁵⁾

전자의 주장은 무력의 사용이 UN헌장외에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관습법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복구(reprisals),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간섭, 또는 인도적 간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¹⁶⁾ 요컨대 무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당한 간섭은 금지되는데, 금지되지 않는 간섭, 즉 정당한 간섭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력사용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무력사용금지 위반에 항상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택했다. 즉 ICJ는 병기의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은 불법적인 간섭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는 현장 제2조 제4항에서 규정된 무력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¹⁷⁾

(3) 부당한 압력과 무력사용

무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부당한 압력이 무력의 사용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예컨대, 1970년 UN 총회의 국가간 우호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제2625호) 채택과정에서, 서방 국가와 당시의 구 소련 진영 국가들간의 논쟁에서 이러한 논리가 발견된다. 후자의 국가들은 무력에는 모든 형태의 압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려고 했는데, 반면에 서방진영 국가들은 무력(force)은 바로 무력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¹⁸⁾ 또한 서방 국가들은 영토의 보전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력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러한 압력은 불법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¹⁹⁾

15) Oscar Schachter, "The Right of States to Use Armed Forces", 82 Mich L. Rev. 1984, pp. 1720, 1633, 김부찬 (2006).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인도법논총, (26), 317-353.에서 재인용

16) 김부찬, 전계논문 325면

17) Nicaragua 판결문 para.228,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Of 27 June 1986

18) UN Doc. A/AC.125/SR.114 (1970)

19) UK representative (Mr Sinclair), UN Doc. A/AC125/SR25 (1966),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에서 재인용

구체적 사건으로서 니카라과 사건에서 니카라과 측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 UN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른 무력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ICJ는 그러한 압력은 헌장 및 관습법상의 무력의 개념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⁰⁾

(4) 부당한 무력의 위협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력의 위협은 항상 금지되지만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무력의 위협이 궁극적으로는 무력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²¹⁾

이에 대한 반대론은 무력의 위협과 사용이 분리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력의 사용과 금지를 한 묶음으로 취급한다. 핵무기의 적법성 문제에 관한 권고의견에서 ICJ는 무력행사가 그 자체만으로 불법인 경우라면, 그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도 UN헌장이 금지하는 위협에 속한다고 보았다. ICJ는 위협이 사용의 억제 기능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불법 침략을 억제하기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 방위를 위해서 사용할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표하는데, 그 무기의 사용이 불법이라면 그 위협도 불법이고 따라서 핵무기의 사용 위협도 불법이다.²²⁾

2.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무력사용

미국은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 6개월 후에 위성파괴무기(Anti-Satellite Weapons, ASAT) 시스템의 개발계획에 착수한 바 있다.²³⁾ 우주 무기배치에 포함되는 무기

20)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48).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21) R. Sadurska, "Threats of Force", 82 Am. J. Int'l L. 237, 250 (1988)

22) ICJ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이하 "핵무기 권고의견"이라 칭함), para. 47

23) Paul B. Stares, *The Militarization of Space: U.S. Policy, 1945-1985*, at 14-18 (1985), David A. Koplow, "ASAT-IS FAC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Regulation Of Anti-Satellite Weapons" 30 Mich. J. Int'l L. 1187,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에서 재인용

체계는 위성파괴무기(ASAT), 레이저빔, 또는 드론 등이다. 인명 내지는 재산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무기체계가 UN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라 금지된 무력사용을 위한 무기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무력사용의 제한에 대한 학설에 따라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배치가 UN헌장에 따라 금지되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²⁴⁾

첫째,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구 소련 양국이 정찰위성으로 서로를 감시하면서 핵전쟁의 발발을 막는 신뢰를 구축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주무기가 파괴용이라면 달라진다. 즉 우주무기가 파괴용이라면, 그 사용이 무력사용이다. 금지된 무력사용의 경우에, 핵무기 권고 의견에서의 ICJ의 논리와 같이 무력의 위협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우주무기의 배치도 금지된다. 즉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는 사용과 위협이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사실관계에 해당된다.²⁵⁾ 예컨대, 핵무기 권고의견에서 Weeramantry 판사가 소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기의 보유상태와 대기상태는 구분되는 것이고, 후자의 상태는 사용과 구별되기 어렵다.

둘째, 우주공간에 무기배치는 지상에서의 합법적 무력사용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간접 또는 압력의 수단으로 우주공간에 배치된 무기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우주무기배치는 합법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셋째, 무력사용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는 해석론에 따를 때에, 현재와 같이 고려되는 우주무기가 국가의 영토보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우주공간에의 무기 배치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²⁷⁾

24) 조흥제 외, “우주법, 정책 : 우주에서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6권2호, 2011년 12월, 203-237

25) ICJ 권고의견 para.47

26) 다만 제3장과 제4장에서 보듯이 불법일 수도 있다.

27) 다만 제3장과 제4장에서 보듯이 불법일 수도 있다.

IV. 일반 전쟁법 규범과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접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²⁸⁾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²⁹⁾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1. 우주폐기물 문제

우주공간에서의 무기의 사용은 우주폐기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은 무기 사용의 적법성 자체를 위협한다.

(1) 우주폐기물의 위험성

우주폐기물통제에 관한 국제협의기구(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IADC")가 국제연합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주폐기물의 크기별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³⁰⁾ 직경 1mm 미만의 작은 폐기물은 우주선의 sensor, 전력선 및 파이프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직경 1mm 내지는 1cm의 폐기물은 우주선 외벽을 관통하여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직경 1cm보다 큰 폐기물은 우주선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거나 파괴시킬 수 있다. 현재는 10cm보다 큰 폐기물만이 지상의 감시장치에 의해서 추적될 수 있다. 다만 GEO인 경우에는 1m보

28) Major Robert A. Ramey, "Armed Conflict On The Final Frontier: The Law Of War In Space", Air Force Law Review 2000, pp.3-5

29) 위 논문

30)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presented to: 35th Session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ited Nations, pp. 8-9, http://www.iadc-online.org/Documents/35th_UN_COPUOS_STSC.pdf, 2016년8월20일 방문

다 큰 폐기물만이 추적될 수 있다.

2007년 중국의 위성파괴무기의 실험으로 1cm보다 큰 우주폐기물 150,000여 개가 배출된 것으로 탐색되었고, 2000년도 러시아의 Kosmos-2251 위성과 미국의 Iridium-33 위성의 충돌로 인해서 2,000여개 이상의 우주폐기물이 배출되었다. 이 두 사건만으로 인해서 배출된 폐기물이 현재 미국 전략공군사령부의 합동본부(Joint Functional Component Command for Space, “JFCC”)가 추적하는 우주폐기물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 우주 무기의 위험성

NASA의 연구원인 Kessler가 1978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³¹⁾, 비교적 큰 우주물체가 우주폐기물이 되고, 그 폐기물들이 충돌하면서 더 작지만 더 많은 수의 우주폐기물이 배출되고, 그 작고 더 많은 우주폐기물들이 다른 우주물체나 우주폐기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비례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우주공간은 우주물체가 항행할 수 없는 우주폐기물의 구름층으로 뒤덮이게 된다. 또한 2010년 Kessler를 비롯한 NASA의 연구진은 그러한 효과(이른바 “Cascade effect”)를 당시의 데이터와 방법론으로 추정한 결과는 2010년 당시부터 추가로 우주선의 발사가 없더라도 그러한 Kessler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으며, 향후 50여년간 비교적 큰 규모의 충돌의 발생 빈도가 지난 50년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날 것이다.³²⁾ 지난 2007년에 중국이 수행한 ASAT 실험은 골프공 크기의 파편을 2000여개 정도 발생시켰는데, 이 정도의 인공위성 파괴가 향후 10년 동안에 3회 정도 더 발생한다면 Kessler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31) D.J. Kessler and B.G. Cour-Palais, “Collision Frequency of Artificial Satellites: The Creation of a Debris Bel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83, No. A6, pp. 2637-2646, June 1, 1978.
<http://webpages.charter.net/dkessler/files/Collision%20Frequency.pdf>, 2016년5월15일 방문

32) Donald J. Kessler et al., *The Kessler Syndrome: Implications to Future Space Operations*, 33d Annual AAs Guidance and Control Conference, Paper AAS 10-016, at 1 (Feb. 2010),
<http://webpages.charter.net/dkessler/files/Kessler%20Syndrome-AAS%20Paper.pdf>, 2016년5월15일 방문

2. 비례의 원칙

(1) 비례의 원칙의 법원과 내용

비례의 원칙은 여러 전쟁법규에서 성문화되어 있다. 목적과 수단의 비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헤이그 육전규칙 제22조는 교전자격자는 적을 손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무한한 권리를 갖지는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1923년 헤이그 공중전 규칙 제24조의 제4항은 지상군 작전에 바로 인접한 도시, 마을, 또는 거주지역 등에 대한 폭격은, 민간인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그 폭격을 정당화할 만큼 군사적 목표물이 집중되어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있다면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차별공격의 부당성도 비례의 원칙에 근거한다. 예컨대,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제51조 제5항은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을 무차별 공격의 유형으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에 속하는 관습법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 보고서는 이를 비례의 원칙에 속한다고 간주하고 있다.³³⁾

아울러, ICJ는 핵무기 권고의견에서 환경의 보호도 무기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2) 비례의 원칙에 따른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제한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은 우주 폐기물을 발생한다면 이는 민간 우주물체에 대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 무기배치는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군의 팜플렛은 군사적 우위의 기대가능성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교전중에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우

33)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ume I: Rules,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Beck, Cambridge, Reprinted with corrections 2009

위가 획득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군사적 우위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은 불가피하고 우발적인 민간인 피해의 발생은 민간인의 (보호받을) 권리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지는 않는다.”

미국 공군의 *Commander's Handbook*에 따르면 예견되는 군사적 우위에 비추어 볼 때에 민간인의 상해가 너무 심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에 대한 우발적이거나 부수적인 상해가 무기의 사용으로 유발되었다고 해서 그 무기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우주 공간에서 일부 우주물체가 손상을 입거나 멸실되는 공격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예컨대, 지구궤도를 전부 사용할 수 없게 할 정도의 공격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³⁴⁾

3. 무차별적 무기사용의 금지

(1) 주요 내용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제51조의 4항은 특정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및 효과가 제한되지 않는 무기를 금지하고 있다.

군사 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무기는 무차별적 무기에 해당한다.³⁵⁾ 효과가 통제되지 않는 무기도 무차별적 무기에 해당한다. ICJ 핵무기 권고의견에 대해서 국가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예상되는 군사적 우위에 비해서 과도한 민간 피해를 유발하는 무기가 무차별적 무기에 해당한다. 이 권고의견에서 ICJ 판사들은 개별의견에서 핵무기의 효과가 통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무차별적 무기로 간주했다.

다만 학설은 무차별 무기 자체가 관습법적으로 위법인지 아니면 특정 조약이나 관습법에 의해서 특정하게 금지된 무기만이 무차별성을 이유로 금지인지에

34) 김한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1호, 2015. 273~302면

35) ICJ, Nuclear Weapons case, Dissenting Opinion of Judge Higgins (ibid., § 392).

대해서는 나뉘고 있다.³⁶⁾

미국 공군 팸플렛은 무차별무기의 사용 금지에 관해서 무기의 통제할 수 없는 영향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예견되는 군사적 우위에 비해서 과도한 영향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에 해당한다. 즉 국제법상 군사적 목표물만에 무기의 영향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영향이 불법적으로 비례에 어긋나게 민간인에게 상해나 손해를 끼치는 무기가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⁷⁾

한편 의도적으로 무기의 정확성을 저하시켜서 사용되는 무기체계도 위법이다.³⁸⁾

(2) 무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 제한

우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우주 무기의 사용은 우주 공간의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³⁹⁾ 즉 우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그러한 환경의 보호가 법적으로 요구되는가에 있어서, 1997년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사건에서 환경의 보호가 국가로 하여금 국제법상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ICJ는 충족한다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⁴⁰⁾ 즉 환경의 보호는 국가의 필수적 이익에 속한다. 이러한 판단의 논거로서 ICJ는 동 법원이 핵무기 권고의견에서 환경의 보호는 국가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례를 인용하였다.

또한 환경과피 및 변경 무기를 금지하고 있는 1976년 환경무기금지협정 제2조는 보호되어야 할 환경의 개념에 우주공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1992년에 미국 정부가 UN 총회 제6위원회에 위 협약에 따른 의견서로서 보낸

36) ICRC 보고서 1권 248면

37) US, Air Force Pamphlet (1976), § 6-3(c).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05)에서 재인용

38) Michael N. Schmitt,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in 21st Century Warfare, 2 Yale Hum. Rts. & Dev. L.J. 143 (1999)

39) 김한택,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1호, 2010, 205-236면

40) ICJ,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Judgement, 25 September 1997, §§ 50 - 53.

41) 1976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Adopted by Resolution 31/72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10 December 1976.

문서에 따르면 금지된 환경변화행위는 환경의 자연적 과정을 의도적으로 변경 시킴으로써 타국에 대한 파괴, 손해 및 신체상 상해 등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영향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오랜동안 지속되는 적대적 행위를 말한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우주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Kessler 증상이 구현된다면 그러한 무기 사용은 환경파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그러한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

V. 제한전쟁론과 우주공간의 무기배치 및 사용의 제한

과거에 전쟁의 목표는 전략적 군사 목표를 달성해서 적대국의 전쟁 수행의지를 변동시키거나 자신의 의도에 따르게 하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사용과 그 효과가 통제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1. 제한전쟁론

(1) 정당한 전쟁과 제한전쟁의 구분

제한전이란 용어는 고전적 전쟁법상의 용어이기도 하고 현대전에서의 특정한 전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현대적 의미의 제한전의 개념은 웨스트 팔리아 조약(1648년) 이후부터 프랑스 혁명까지의 기간 동안 유럽 사회에서 경험된 전쟁을 가리킨다.⁴²⁾ 뒤를 이어서 Grotius는 고대 그리스 또는 중세 봉건시대때에 “single combat”이 전쟁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⁴³⁾ 군주가 지명한 전투원이나 군주 자신들간의 대결의 결과에 승복하기에 양측의

42) 유재갑, 정의환, “제한전쟁(制限戰爭)의 현대적(現代的) 의미(意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7권 2호, 1984, 317-340(24pages)

43) Regular war, jus in bello, and the Ideal of Limited War, Pablo Kalmanovitz,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Paper prepared for the ECPR General Conference 2015
<https://ecpr.eu/Filestore/PaperProposal/63f5e018-5dcc-4810-9bc7-50b2fcb7169b.pdf> 2017년 11월 방문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상대방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전쟁(just war)과 대비된다. 정당한 전쟁론은 특히 16세기에 이르러 북미나 남미 대륙에서 발견된 원주민들의 살육을 Francisco de Vitoria 신부가 정당하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정교한 원리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엇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론은 전쟁 수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 즉 이른바 원초적 침해(original injury)가 발생하면 전쟁의 수행이 정당화되며, 그 전쟁의 목적중에는 응분의 보상을 받는 것과 아울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다.⁴⁴⁾

Vattel은 교전자중의 일방은 정의롭고, 상대방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논리적 근거는 주권을 가진 국가는 평등하기에 일방이 상대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는데에 있다. 그래서 전쟁은 정당한 자가 권리를 갖고 부당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Martens는 전쟁이 처벌을 위해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수단을 제한해서 불필요한 폭력을 면하는 것이 모두의 최상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⁴⁵⁾ 이러한 사상에 기초해서 전쟁은 정규군(regular forces)에 의해 수행되는 정규전(regular war)이 핵심이고, 정규전이 중요한 이유는 교전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당사자 모두에게 전쟁의 수단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정당한 전쟁에 대비되는 제한전쟁론의 내용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익의 추구가기에, 양 당사자 모두 상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옳은 자만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과는 구분된다. 그래서 정당한 전쟁과 대비는 제한전쟁론은 도덕률과 구별되는 법규범을 수용한다. 즉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합법과 위법의 구분이 제한전쟁론에서 인정된다.⁴⁶⁾

(2) 전멸전과 제한전의 구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핵무기의 등장 이후의 전쟁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한전

44) 위 논문 5-6면

45) 위 Pablo Kalmanovitz 논문에서 재인용

46) 위 논문 16면

쟁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였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는 전쟁 당사자 모두의 전멸에 이를 수 있는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전쟁이 실제로 경험되었다. 한국전쟁이 첫 번째 사례였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할 것이라는 이론이 틀렸다고 입증한 사례가 한국전쟁이었다.

제한전쟁론을 주창하는 Osgood은 핵무기 시대에 전쟁은 제한전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가 사용될 수 없음을 경험한 이상 제한전쟁에 대비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대국 구 소련이 세계 어디에서든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한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핵무기의 억제력만에 의존하면 결국은 미국의 이익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한전쟁이기에 그러한 전쟁에 대비하여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전쟁을 제한전쟁으로 국한시켜야 미국의 이익이 보호되는가에 질문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제한전쟁이라고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그는 첫째, 교전국은 전투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둘째, 그 목표는 교전국이 전투력의 최대치를 발휘하여야만 달성될 수 있는 정도여서는 안되며, 셋째, 특히 협상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⁴⁷⁾ 그의 주장은 실제 경험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제한전쟁의 개념을 다시 사용하는 주장은 그러한 전쟁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고 정치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⁴⁸⁾

(3) 위법이 아닌 제한전쟁

국제공법에 있어서 제한전쟁은 전시상태와 평시상태의 중간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적용 범규범의 수정을 요구한다고 판단되었다. 예컨대, Jessup은 이는 제3의 상태로서, 평시상태는 아니지만, 전쟁상태가 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서 법적으로 위법여부를 가릴 수는 없지만 허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⁴⁹⁾

47) Osgood,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trategy" 2 (1957), Captain Gordon B. Baldwin "A New Look At The Law Of War: Limited War And Field Manual" 27-10 Military Law Review, April, 19594 Mil. L. Rev. 1 에서 재인용

48) 유재갑, 정의화, 전계 논문 336면)

49) Jessup, Should International Law Recognize an Intermediate Status Between Peace and War?, 48 AM. J. INT'L L. 98 (1954); Jessup, Intermediacy, 23 Nordisk Tidsskrift For International Ret 16

그와 같이 "허용되는 중간상태"의 법적 지위는 전쟁의 승자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위법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컨대, 구 소련의 붕괴에 따라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발생한 전쟁들이, 국제공법상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았다. 그 중의 하나가 NATO군의 코소보 공습이다. 이 공습은 제한전쟁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군사적 목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히 경제적 제재와 연결되어 있는데도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았다.⁵⁰⁾

요컨대, UN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라서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사용이 금지되지만, 2차대전 이후에 경험한 여러 전쟁중에서 교전국들이 전투의 목표를 정한 전쟁이기에 제한전쟁이라 불리고 그래서 정당화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최근에는 테러의 억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억제를 위한 이라크 침공 등도 이러한 논리로 정당화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2.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제한전쟁론적 특성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은 그 양상에 따라서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해당하기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쟁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 우주공간에서의 전투와 지상전의 구분

정찰위성과 통신위성만의 사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의 사용을 고려하는 우주공간에의 무기 배치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이 지상전에 반드시 부수적이지만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내의 자산의 보호를 목표로 하므로 그러한 배치와 전쟁은 지상전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세가지 기준, 즉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금지, 일반 전쟁법규, 및 "허용되는 중간상태" 기준의 적용이 구분되어야 한다.

(1953). ; Myres S. McDougal D1 Florentino P. Feliciano, International Coercion And World Public Or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Of War, Yale Law Journal, April, 1958에서 재인용
50)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예컨대, 합법적인 지상전에 부수되는 우주공간에서의 전투이더라도 우주폐기물을 생성하는 전투는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가정으로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가정으로서,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승복하지 않고 지상전을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가능성이 큰 가정이다. 이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이 선행하므로 그 법적 지위는 후속되는 지상전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우주이용능력의 차단

우주공간에의 무기배치와 사용이 고려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적대국의 우주이용능력의 차단이다. 예컨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우주정책에 따르면 적대국의 우주이용능력을 차단(deny)하는 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우주무기화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이에선 지상에 있는 발사장의 무력화, 궤도에 진입하려는 발사체의 파괴 등이 차단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사장에 대한 포격이나 폭격, 또는 전자기펄스(Electromagnetic Pulse, "EMP") 공격 등은 지상전의 법적지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주공간에서의 전투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해당하더라도, 타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은 UN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사용에 해당한다.

(3) 우주공간에서의 우주물체에 대한 공격

위의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공격이고, 지상전과는 구분되는 공격이라면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에 해당한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무기체계와 국가간 합의의 수

준으로 보면, 아직은 거리가 멀다. 예컨대 EMP무기는 우주폐기물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적법할 수 있으나, ASAT을 EMP무기로만 한정하자는데에 미국, 중국 및 러시아 등이 아직 합의하지 않고 있다.

VI. 결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실제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허용과 제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 및 일부 학술적 논의에서는 우주무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주공간의 무기배치와 사용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일종의 레토릭으로서 우주공간의 이용은 이제 우주공간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Outer Space)에서 우주공간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Outer Space)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후자는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라고 생각된다.

한편 군사화에서 무기화로의 변화가 어찌 보면 당연한 진화이기에 정치적 내지는 법적인 정당성이 찾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일반 국제법 규범에 따라서 볼 때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우주폐기물을 생성시키고 그로 인해서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공간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쟁법상의 일반적 원칙의 시각에서 신중히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인 제한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제한의 하나가 1967년 우주조약에 따른 대량파괴무기 금지이다. 즉 우주공간에서의 대량파괴무기의 배치와 사용 금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한전의 원리에 따르는 정당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주폐기물 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에, 대량파괴무기 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한은 우주폐기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

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우주공간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힘을 이용하겠다는 미국, 그에 반해서 힘은 없지만 미국도 우주공간을 이용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상대 국가들간에 합의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세번째 제한은,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범의 수립을 통한 제한이다. 위의 두 번째 제한이 없는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쟁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제한전쟁의 원리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의 법적 지위는 특별하다. 즉 그 지위는 지상에서의 전투와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합법적인 지상전에 부수적으로 우주공간에서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의 법적 지위는 지상전과는 독립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주폐기물을 생성하는 전투를 위법이라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법규범의 수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논문]

- 김부찬,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인도법논총, (26), 2006년
- 김한택,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1호, 2010, 205~236면
- 김한택,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1호, 2015. 273~302면
- 유재갑, 정의환, “제한전쟁(制限戰爭)”의 현대적(現代的) 의의(意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7권 2호, 1984, 317-340
- 조흥제 외, “우주법, 정책 : 우주에서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6권2호, 2011년 12월, 203-237

[국외 논문 및 저서]

- Captain Gordon B. Baldwin “A New Look At The Law Of War: Limited War And Field Manual” 27-10 Military Law Review, April, 19594 Mil. L. Rev. 1
-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Harrison Dinniss, Heather (2012-07-19).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 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 P. Jessup, “Should International Law Recognize an Intermediate Status Between Peace and War?”, 48 AM. J. INT’L L. 98 (1954);
- Pablo Kalmanovitz, “Regular war, jus in bello, and the Ideal of Limited War”,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Paper prepared for the ECPR General Conference 2015
- <https://ecpr.eu/Filestore/PaperProposal/63f5e018-5dcc-4810-9bc7-50b2fcb7169b.pdf>

2017년11월 방문

- D.J. Kessler and B.G. Cour-Palais, “Collision Frequency of Artificial Satellites: The Creation of a Debris Belt”,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Vol. 83, No. A6, pp. 2637-2646, June 1, 1978. <http://webpages.charter.net/dkessler/files/Collision%20Frequency.pdf>, 2016년5월15일 방문
- Donald J. Kessler et al., *The Kessler Syndrome: Implications to Future Space Operations*, 33d Annual AAs Guidance and Control Conference, Paper AAS 10-016, at 1 (Feb. 2010), <http://webpages.charter.net/dkessler/files/Kessler%20Syndrome-AAS%20Paper.pdf>. 2016년5월15일 방문
- David A. Koplow, “ASAT-Is Fac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Regulation Of Anti-Satellite Weapons” 30 *Mich. J. Int’l L.* 1187,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9, p.1216
- Myres S. McDougal & Florentino P. Feliciano, “International Coercion And World Public Or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of War”, *Yale Law Journal*, April, 1958
- Major Robert A. Ramey, “Armed Conflict on The Final Frontier: The Law Of War In Space”, *Air Force Law Review* 2000,
- W.J. Reisman, ‘Coercion and Self-determination : Constructing Charter Article 2(4), 78 *AJIL*, 1984, p.642
- R. Sadurska, “Threats of Force”, 82 *Am. J. Int’l L.* 237, 250 (1988)
- Oscar Schachter, “The Right of States to Use Armed Forces”, 82 *Mich L. Rev.* 1984, pp. 1720, 1633,
- Michael N. Schmitt,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in 21st Century Warfare*, 2 *Yale Hum. Rts. & Dev. L.J.* 143 (1999)

[기타 문헌]

-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pursuant to Public Law 106-65,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0, Section 1622, 11 January 20

- 01, 2016년10월 방문, <http://www.dod.gov/pubs/space20010111.html>.
-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presented to: 35th Session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ited Nations, pp. 8-9, http://www.iadc-online.org/Documents/35th_UN_COPUOS_STSC.pdf, 2016년8월20일 방문
- 미국 하원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소속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청문회 “Weaponizing Space: Is Current U.S. Policy Protecting Our National Security?”, 2007년5월23일 청문회
- Department of Defense, JP 3-14, Space Operations, I-2.
- U.S. Air Force, “Counterspace Operations,” Air Force Doctrine Document 2-2.1, August 2, 2004.
-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ume I: Rules, Jean-Marie Henckaerts and Louise Doswald-Beck, Cambridge, Reprinted with corrections 2009

초 록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 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우주무기, 우주조약, 우주무기화, 우주폐기물, 전쟁법

Abstract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Shin, Hong-Kyun*

The protection of space asset has been new major cause of space militarization. For such purpose, it has been officially announced that a policy of deterring and denying any adversaries from accessing the outer space. Space militarization is to be conversed into a new concept of space weaponization.

The USA has announced its policy of space weaponization, while China and Russia have not revealed their plan or policy. Latter States, however, have proposed a draft treaty limiting the deployment of warfare in the outer space.

The term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flecting three significan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from the 1960s, support the position that ground rules must be observed in the exploration and the use of outer space, particularly in the absence of specific space law rules. Yet the combination (and culmination) of these two approaches to the legal regulation of outer space—specific rules as and when agre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translation of principles developed for terrestrial regulation to outer space—still leaves much room for uncertainty and exploitation for military and strategic purposes. As space weaponization may contribute to deterring the use of weapon, it may be not against the UN Charter Article 2(4).

If space weaponization might generate the space debris such that the outer space is no more available for exploration and use, it is against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discrimination principle enshrined in the laws of the war.

But, if the limitation upon the kind and use of space weaponization is agreed among the States, then the space weaponization may not be against the laws of

* Professor,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the war, and be considered permissible within the rationale of limited war.

Key words : Space Weapon, Outer Space Treaty, Space Weaponization, Space Debris, The Laws of the War